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일 시 : 2023. 10. 5. (목)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C/O/N/T/E/N/T/S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인사말

강성희 국회의원	1
강은미 국회의원	3
용혜인 국회의원	5

기조발언

■ South Korea's Anonymous Birthing Bill Fails to Protect Women, Children	7
Susanné Bergsten Human Rights Watch	

발 표

■ 발표 1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11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발표 2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23
나 영 대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발표 3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31
최형숙 대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발표 4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37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 발표 5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43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표 6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49
조민호 대표 아동권익연대(준)	
■ 발표 7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55
이다정 간호사/작가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 발표 8 정부의 입장	6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인사말



국회의원 강성희

상반기 연일 언론에 다뤄지며 충격과 안타까움을 가져다준 소식이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동, 버려졌지만 제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아동, 그리고 베이비박스 아동의 이야기가 알려질 때마다 뭐라도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논의의 주제인 ‘보호출산제’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책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보호출산제’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었다는 보고가 없다는 독일의 사례가 있고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보호’라는 이름만 붙여 영성하게 법·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법의 친생자 추정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자기결정권 그리고 미혼부(생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기존 법제도와 권리들과의 충돌이 예견됩니다.

유령 아동이 있으니, 익명으로 낳게 해 주자에 다름 아닌 제도입니다. 진보당은 이름만 보호출산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전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고 응당한 방향입니다. 오랜 시간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국회가 속도를 내면 오래 걸리지 않을 일입니다.

보호출산제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함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은미의원 그리고 용혜인의원님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진보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회의원 강 성 희

인사말



국회의원 강은미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입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강성희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모두의 안전한 임신증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수정 변호사님, 멀리 독일에서 함께 해주신 Susanné Bergsten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보호출산제법의 한계점에 대해 발표해 주시는 신수경 변호사님, 나영 대표님, 최형숙 대표님, 이예지 변호사님, 김성연 국장님, 이다정 간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되어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부터 법안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호출산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동과 여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이 선의를 가졌더라도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게 되어 아동의 유기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도 우려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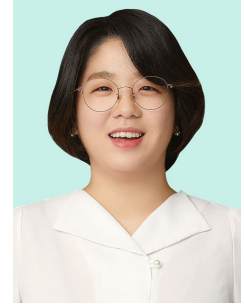
법안소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보호출산제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외국인 배제, 미성년자나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 장애 아동 유기 조장 등 아직 쟁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호출산제의 한계와 쟁점들을 짚어주시고 향후 과제까지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쳐 다층적이고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더 약자의 편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회의원 강 은 미

인사말



국회의원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상반기,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포함해,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으며 양육될 권리를 고민했습니다. 여성이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 재생산 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아닌 출생통보제는 사각지대가 분명했고, 출생등록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아가, 임신중단권을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양육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도록 변화를 견인해야 했습니다.

아동권리, 여성권리, 재생산권, 가족구성권, 돌봄공공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보호출산제’라는 단편적인 해법이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과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또다시 부정되었고, 이주 아동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발표자 분들의 지적대로 보호출산제는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지 못하겠거든 버리고 가라”는 빈약하고 무책임한 메시지를 던질 뿐입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보호출산제 제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아 유기와 살해의 대책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긴급간담회에서 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출산제 제정 이후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회의원 용 혜 인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기조발언

South Korea's Anonymous Birthing Bill Fails to Protect Women, Children

Susanné Bergsten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s Anonymous Birthing Bill Fails to Protect Women, Children

●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하여 휴먼라이츠워치가 국회의원님들께 보내는 서신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5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휴먼라이츠워치를 대표하여 본 서신을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그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는 성적 및 재생산적 권리, 젠더폭력, 교육권,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권리 등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을 검토한 후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미등록 아동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 원인은 내버려둔 채 익명 출산 및 출생 신고를 통해 미등록 아동과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법안은 오히려 가부장적인 구조와 제도, 장애인 차별, 미혼모와 원치 않는 임신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권리 활동가들은 또한 이 법안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기르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보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즉시 피임과 낙태 서비스를 보장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편적인 출산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병원에서의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베이비 박스’ 운영을 금지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19년도 권고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온라

인 등록을 포함한 출생 등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보험, 복지, 여가, 정부 지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국으로서 여성의 자율성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께 보호출산제 법안의 도입을 재고하고, 대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모든 여성이 안전한 낙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태약의 시판을 승인하고,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적인 ‘베이비 박스’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 여성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써 익명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및 기타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느 누구도 단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등록시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이 자라면서 어려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미혼모와 그 자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분명히 정해진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 초중등학교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연령에 맞고, 인권에 기반한 의무 성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재생산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신중히 고려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본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수잔 승은 버그스텐(bergsts@hrw.org)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레나 사에즈
휴먼라이츠워치
여성부 상임이사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상임이사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1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1. 들어가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이라 한다)의 목적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 지원 및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의 보장(법안 제1조)’이며, 정부는 법안에 포함된 보호출산제의 도입취지를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영아살해 및 아동유기와 같이 출생직후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¹⁾는 점에서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그 제정취지에서부터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전제하고,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의 각 조문별 문제점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한다.

- 1) - **영아살해**의 경우, 많은 연구들은 **임신거부증**과 같이 본인의 임신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심리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한 일시적인 비정상적 정신기능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정세미나, 2012).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임신거부증의 증상이 있는 임신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통하여 실제로 영아살해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아동살해의 가능성을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이후 독일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한다.
- **영아유기**의 경우는 영아살해와는 달리 산모의 ‘합리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현소혜, 2017),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산모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들은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며, 산모가 아동을 키우려 노력했으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합리적 결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 아동을 유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아동을 유기한 것이므로, 만약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차 줄어들고, 이들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실질적인 주거지원, 양육비 지원, 양육수당, 부모수당 및 돌봄 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면, 충분히 아동을 유기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기임산부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부분**이다.
- 한편, 영아유기 방지와 관련하여, 보호출산 제정법안이 오히려 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임신부가 구개파열, 다지증, 단지증, 사지결손, 외모상 기형, 선천적 대사이상, 청각장애 등과 선천적 심장병, 선천성 태독,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프레시안, 보호출산제, 장애아동의 합법적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023. 9. 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409590338179>

2.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제14조의 문제

-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임신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산 및 제12조의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의 출생신고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출생통보제 취지 몰각

지난 2023. 6. 30.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와 모 중 생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는 일방인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학대·아동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에 아동이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을 물론,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각종의 권리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경우, 의료기관 밖의 출산 등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상과 같이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오히려 **출산이 의료기관에서 완료되고 난 후 1개월 이내에도 보호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원래의 내용을 따른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완료된 아동은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산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도저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제15조 상의 각종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미이행’ 하는 경우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된 개입과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생통보제 법안과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간의 충돌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14조는 제4항을 통하여 막연히 “보건복지부령” 차원에서 이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충돌을, 더욱이 아동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알 권리”, “정체성을 알 권리”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고, 체계정당성상으로도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나. 현행 입양특례법과의 충돌·형해화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모는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동에 대한 모의 신원이 적시된 출생신고 후, 친생부로 예상되는 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라도 친생관계를 확인하여 친생부로서의 입양동의를 받고 그 정보까지도 기입한 후에 입양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향후 아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을 때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친생부모 중 일부는 입양 동의의사를 철회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에 따르면, 산모가 원할 경우, 출산 후 1개월 이내라면 보호출산 제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모의 정보 또는 친부의 정보를 굳이 공을 들여 언급할 유인이 사라지므로, 위기산모로서는 기존의 입양특례법 상 입양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일 때에도, 보호출산으로 진행할 유인이 더 강해질 것으로 당연히 추정된다. 결국 현행 입양특례법상의 절차와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충돌하는 것이고, 이상의 편의성, 유인 등으로 인하여 현행의 입양특례법은 형해화될 것으로 보인다.

3.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제9조, 제15조, 제17조의 문제

-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임신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임신부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신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해당)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표면에 출생증서가 들어 있다는 사실,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등) ① 제9조의 신청에 따른 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민법 제844조(친생추정)와의 충돌

만약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신부가 법률상 혼인 중에 있는 경우, 출생아동은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 규정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법률상의 남편은 출생아동의 아버지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이러한 민법상 남편의 지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① 생모의 의사만으로 보호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법률상 남편에게 보호출산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고 있지 않고, ③ 법률상 남편을 포함한 생부의 정보 기재 여부를 전적으로 생모의 의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친모가 원치 않는 경우, 친모는 친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남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부는 아동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아동을 찾을 방법이 전무하다. 또한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혼 부부 사이에 낳은 아동이라고 할 지라도, 아동의 친모가 보호출산을 이용하여 아동의 친부에 대한 정보를 숨길 경우,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민법상의 친생추정조항을 탈법²⁾하여 법률상 남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³⁾.

나. 생부의 권리와 충돌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가 2만 여명이고, 미혼부도 6,300여명이 된다. 보호출산은 상담의 주체도 임신부이고 아동 출산 후에 아동을 인도하는 주체도 산모이므로, 이 과정에서 아동의 친부의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는 완전히 배제된다.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출생증서의 공개청구 규정을 현행 「입양특례법」제36조와 유사하게 친생모의 동의가 없이는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도록 한 바, 이는 실질적으로 아동의 알권리⁴⁾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 이다. 더욱이 제15조는 생부에 관한 정보 중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오로지 생모의 정보만 출생증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크며, 생부의 정보를 확보할 방안은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안은 미혼부(생부)의 권리에 대한 최근 일련의 논의에 역행하여, 미혼부(생부)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전적으로 생모의 의사에 의하여 보호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부 정보의 기재도 생모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상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모에게 아동의 친생부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2) - 법률혼 중인 아내가 법률상 남편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후, 생부(법률상 남편)의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출산에 이른 경우, 법률상의 남편은 자신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부당히 박탈당함

- 법률혼 중인 아내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후 보호출산을 선택하였고, 법률상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이혼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 파탄 등에 있어 아내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법률상 남편은 이러한 파탄책임을 묻지 못함

3)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법사위에 출석한 복지부 차관은,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이 특별법이므로 친권이 정지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친권자인 생부(법률상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친권이 정지되는 형태가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 후에 법안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등록될 권리,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등(CRC 제7조)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특히 아동의 부모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아동과의 혈연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동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당해 부모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출생등록을 통한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에 대하여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규정에 비하여,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익명성 보호’라는 법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친부 또는 생부의 정보의 누락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본 제도는 **제정 취지와 관계없이 비적출자⁵⁾인 아동에 대한 ‘출산사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방안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향후 출생증서 공개 시 생부 관련 정보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친생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확보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⁶⁾.

이처럼 생모의 전적인 의사결정만으로 보호출산이 진행될 경우, 가족관계 관련공부상 법률상 배우자의 정보가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누락하였거나, 생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생모가 적극적인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향후 보호출산으로부터 출생한 자로부터 기관(국가)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5)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난 자녀가 아닌 자

6)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아동 만 16세에 도달하면 신원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친모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경우 아동이 만 15세가 되는 때에 정보공개거부신청을 하면, 그때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아동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개인 정보보호 법익 간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의 신뢰출산제에서 아동의 알권리 보장 관련 규정(임신감등법)**

제31조

- (1) 아동이 16세가 되면 비밀출산으로 출생한 자녀는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국에서 보관하는 혈통증명서를 검사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2) 친생모는 자녀가 15세가 되는 시점부터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명으로 열람권과 상충되는 우려사항을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 제3항 제2호의3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담센터는 친생모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을 알리고 우려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친생모와 논의해야 한다. 아동이 법정에서 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친생모에게 알려야 한다.

(3)(4) 생략

제32조

- (1) (전문생략) 가정법원은 열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건강, 개인의 자유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신원을 계속 비밀로 하는 친생모의 이익이 자신의 친자관계를 알고자 하는 자녀의 이익보다 더 큰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후문 생략)

4.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제9조 제2항의 문제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임신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임신부의 신청으로 본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신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호출산제 제정법안 제9조 제2항은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부의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달·정신장애 여성과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보호자의 강요로 보호출산이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부성권의 차별금지(제28조), 성에서의 차별금지(제29조)에 위반**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제1항(b)**에서 규정하는 출산 및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 및 이러한 권리들을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및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상당한 이유” 등의 판단 등에 있어 시행령으로서 이를 구체화 한다는 것으로, 전인적인 결정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결정 주체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한 본 규정은 그 자체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5.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의 한계

이상과 같이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가족관계등록법(출생통보제), 민법(친생추정조항), 입양특례법 등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여, 위임입법 금지의 한계를 넘은 법안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살해와 유기의 방지라는 제정 취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아래와 같이 제도상의 한계가 있음을 더불어 지적하고자 한다.

가.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지난 복지부 감사 및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아동살해 및 유기사건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원치 않는 임신, 남편 또는 연인과 헤어져 홀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에 판결 이유에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이미 현재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힌 여성의 임신중지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 여성은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사체유기죄, 아동매매죄를 행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⁷⁾.

위기임신상태에 있는 여성이 아동의 양육을 포기를 결정할 때는 상대 남성의 책임회피,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안, 불안정한 고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따른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미혼임신을 은폐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혼모는 자녀의 유기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보호출산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으면 여기 아이를 맡기고 가라’라는 메시지만을 주는 바, 여성을 단순히 ‘기록에 남는 것이 두려워서 아기를 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자’로 낙인을 찍으며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편견을 고착화한다.

여성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몰래 출산할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먹는 약의 시판을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의 유지와 종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보편적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임신갈등상황을 해

7) 소라미, “여성을 보호한다는 ‘보호출산제’의 환영”, 2023. 8. 8., 창비주간논평

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주여성과 그 아동을 배제하는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동법 제3조의3에서 동법의 적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에만 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이주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 역시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그룹인 이주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포섭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주여성을 그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할 경우,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우려하는 아동 유기 및 아동 사망을 예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⁸⁾.

다. 아동 양육보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에 따르면,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하여 보호출산 상담을 통한 임산부의 산전검사, 출산비용 지원하고 향후 산후 보호(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연계)를 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 된다. 그러나 현재 일반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산부인과에서 시행되는 산전검사로 대부분 소요되는 임신바우처 100만원 내용이 전부이며, 산후도우미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 수준 및 재산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나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친생부모에게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산전, 출산, 산후 보호)이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를 ‘증명’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의명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보내겠다”고 하는 위기임산부에게는 이러한 증명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임산부들은 오히려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

8)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을 선택하는 위기임신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임신 갈등상담을 1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있는 이주여성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여 그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보호출산제 상담의 핵심기능 부재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에 따르면,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양육과 가능한 서비스를 위기임산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및 내용은 독일의 임신갈등법의 내용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이나, 상담내용에 ‘**성교육, 피임 및 가족계획**’과 ‘**낙태를 수행하는 방법, 낙태의 신체적 심리적 결과 및 관련된 위험**’이라는 독일 「**임신갈등법**」의 상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으로 보건대, 보호출산제 상담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 예견된다 할 것이다⁹⁾.

9) 독일의 「임신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신갈등법, SchKG)」

1장. 교육, 피임, 가족계획 및 상담

1조. 설명

(1) 연방보건교육센터는 성교육의 개념을 제정하고, 다양한 연령 및 개인집단에 맞는 예방적 보건 및 임신 갈등의 회피 및 해결을 목적으로 성교육 개념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아동의 삶에 관한 정보 및 법적 권리 등을 포함한다(1a).

(2) 연방보건교육센터는 피임방법 및 피임약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전국적 교육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3) 교육자료는 무료로 배포되며, 각 학교, 직업훈련기관, 상담센터, 산부인과 의사 및 의료기관, 유전학자, 조산사 및 모든 청소년 및 교육기관에 배포되어야 한다.

(4) 연방은 임신부와 산모에 대한 지원을 공포하며, 익명상담 및 비밀출생에 관한 권리도 안내한다.

(5) 연방은 전국적인 중앙 긴급전화를 통해 갈등상황에 처한 임신부가 즉시 상담센터와 연결되도록 보장한다.

2조. 상담

(1) 모든 여성과 남성은 성교육, 피임, 가족계획 및 임신과 관련된 직간접적 문제에 관하여 상담센터로부터 익명으로 통보 및 조언(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조언(상담)받을 권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성교육, 피임 및 가족계획
2. 직장생활의 특별한 권리를 포함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적 혜택 및 지원
3. 임신 중 예방 검진 및 출산비용
4.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특히 재정적 혜택 및 주택, 고용 또는 훈련
5.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이 손상된 아동의 출생 전후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6. 낙태를 수행하는 방법, 낙태의 신체적, 심리적 결과 및 관련된 위험
7. 임신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8. 입양과 관련된 법적, 심리적 측면

임산부는 또한 숙소를 찾고, 보육시설을 찾고, 교육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상담을 받을 권리에는 낙태 후 또는 출산 후의 후속 치료도 포함한다.

(4)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고, 출산 후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임산부에게 심리사회학적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개방형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2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나영 대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2023.10.05.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보낸 사람들(은) 입양을 보낸 기관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양기관에서 너무 죄인 보듯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생활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입양 간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거라도 알고 싶어서... 입양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죄인 취급을 안 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를 찾아내라고 떼를 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호수,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 사단법인 뿌리의집, 2022.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

'숨겨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의 시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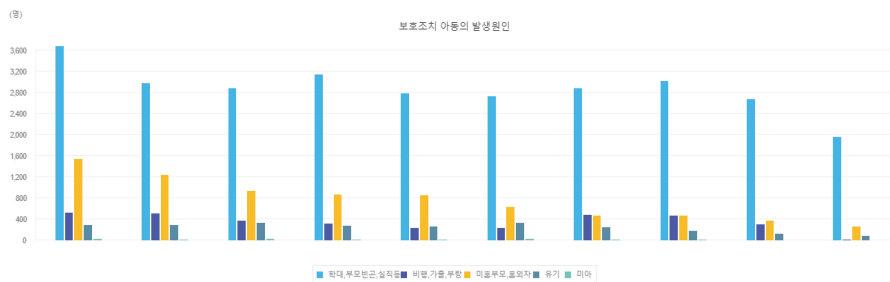
양육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의 전후 배경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상황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는 주체는 오직 출산한 여성 당사자 뿐인가

태어난 이후의 아동의 삶을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사회, 가족, 친생부모, 아동 간의 관계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담아두고 있지 않은가

'숨겨질 권리'가 아니라 양육지원이 필요한 상황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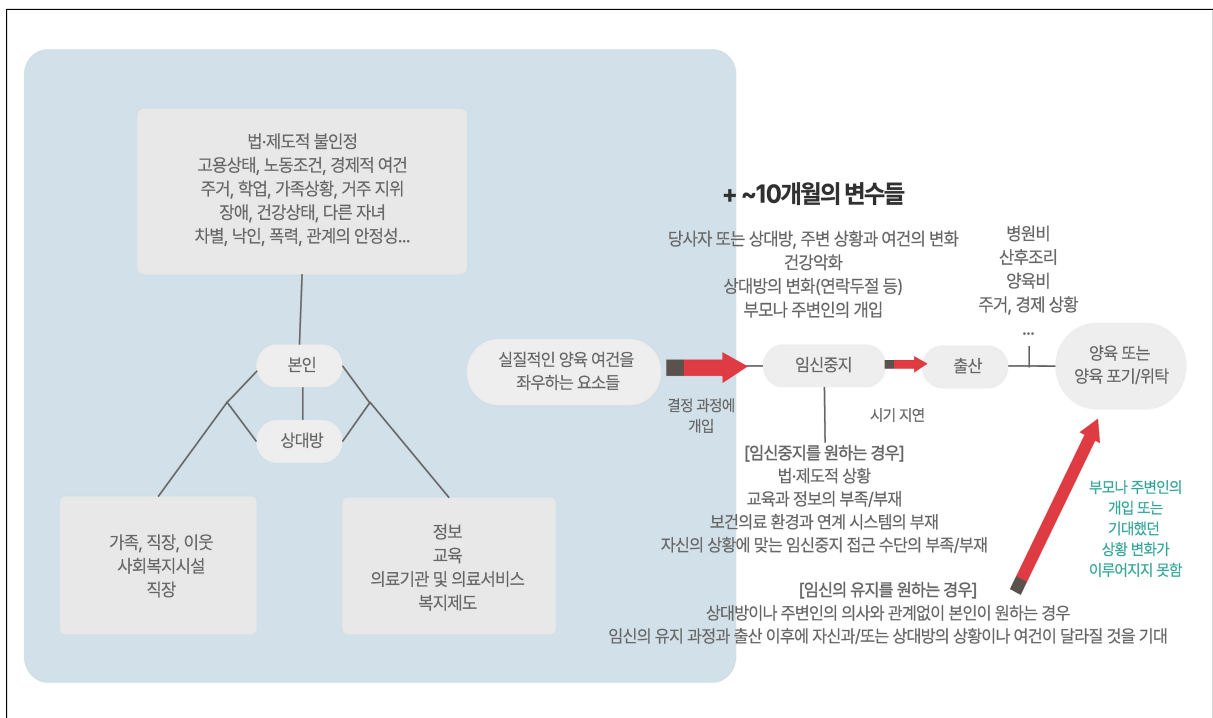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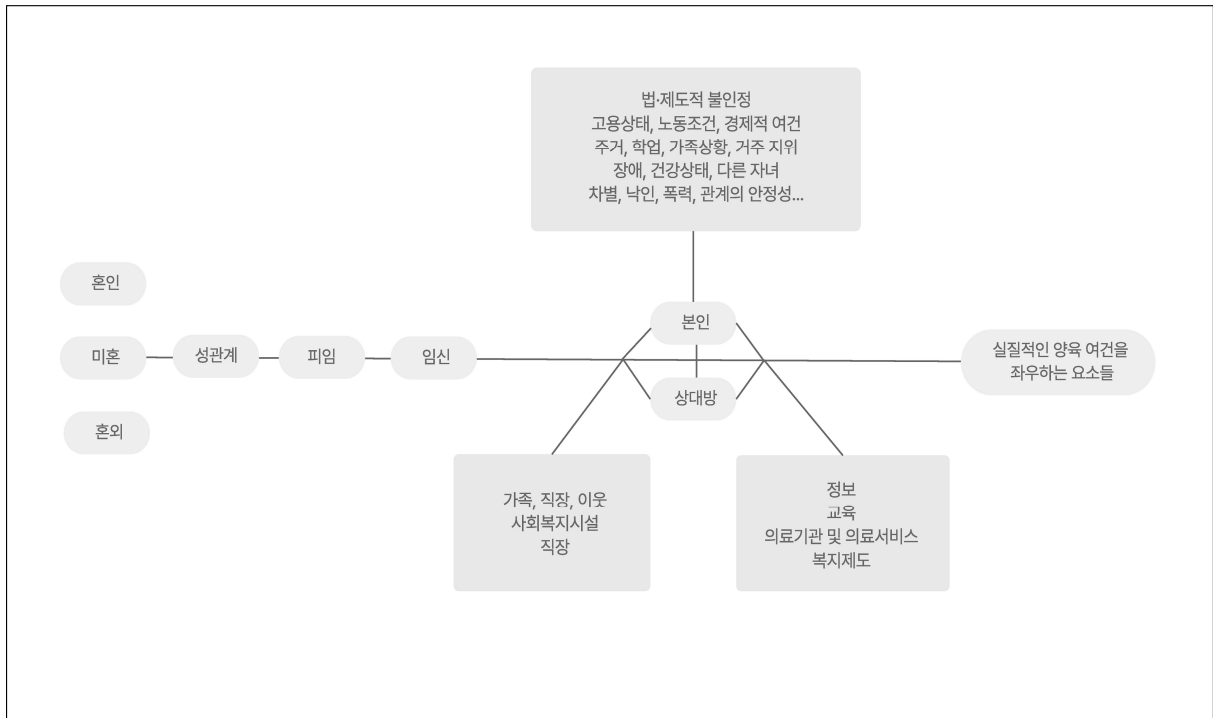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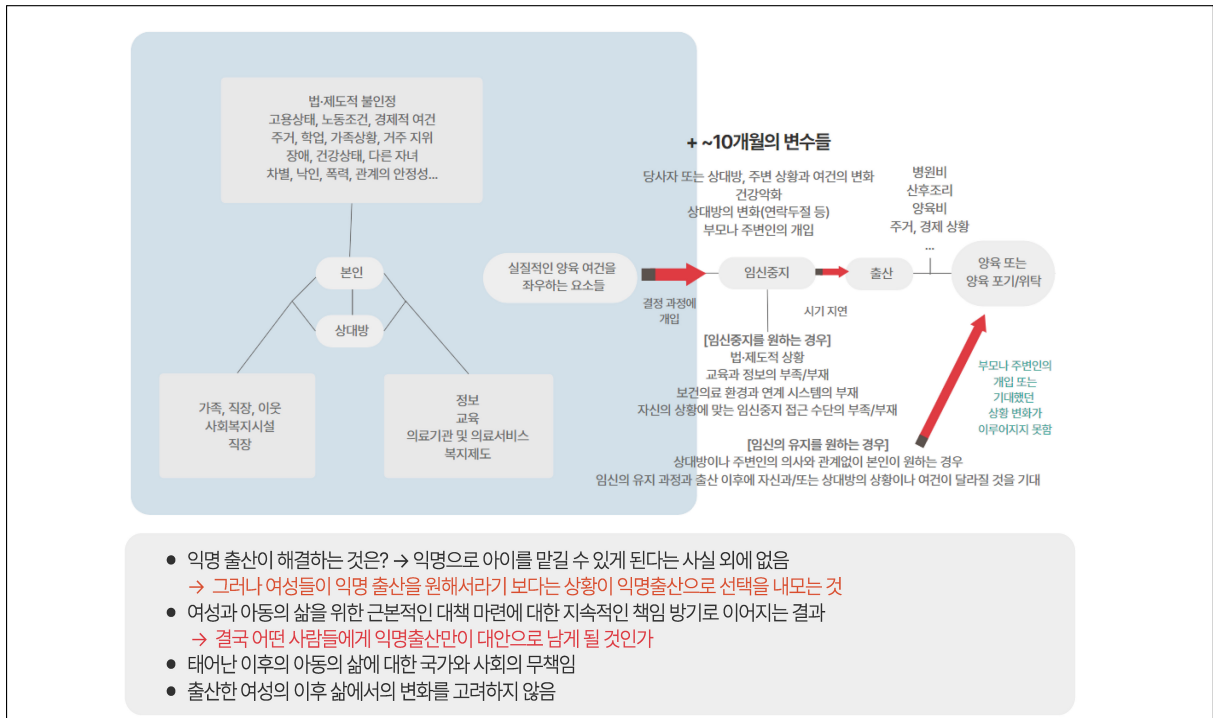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유형 계	6,020	4,994	4,939	4,589	4,125	3,918	4,047	4,120	3,497	2,289
학대, 부모빈곤, 실직등	3,669	2,965	2,966	3,139	2,779	2,726	2,855	3,006	2,661	1,953
비합, 가출, 무단	512	508	360	314	227	231	473	468	293	11
미혼부모, 혼외자	1,534	1,226	930	895	847	623	464	466	366	252
유기	265	282	321	264	261	300	237	169	117	73
미아	21	13	26	11	12	18	8	11	0	0

*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통계공표시기는 작성기준년도 익년도 5월

* 주석: 2008년부터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중 <빈곤, 실직, 학대등 기타> 항목이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세분화됨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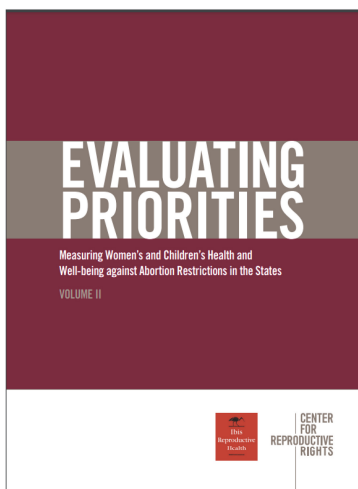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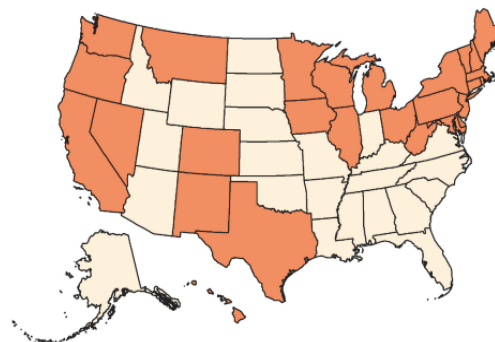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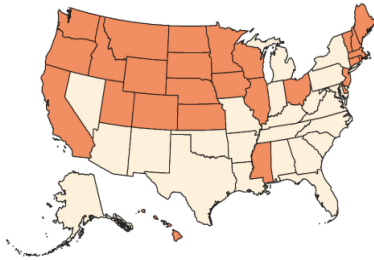


Figure 3. States' number of supportive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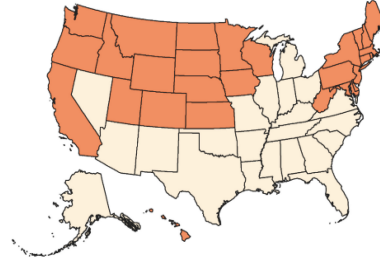
Note: Orange (darker) indicates states above the median (12) supportive policies score, while the lighter color indicates states below the median supportive policies score.

Figure 5. States' score on women's health



Note: Orange (darker) indicates states above the median (5) women's health score, while the lighter color indicates states below the median women's health score.

Figure 7. States' score on children's health



Note: Orange (darker) indicates states above the median (4) children's health score, while the lighter color indicates states below the median children's health score.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돌봄과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 모두의 보장이 필요

출생정보와 친생부모를 찾는 것은 정체성의 확인뿐 아니라 중요한 유전 정보에 대한 확인,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

출산은 여성과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역사-모성에 대한 기대가 아닌, 서로에게 삶의 역사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점

출산 이후 여성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자녀를 찾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지금 필요한 방향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

'위기임신지원센터'가 아닌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담과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보건의료기관 및 양질의 안전한 약물과 시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 적용

양육 지원-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양육과 돌봄의 연계망 확대와 주거/고용/노동/학업 등에 대한 연계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구성에 대한 법·제도적 인정과 지원 체계 마련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낙인과 차별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의 시행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3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최형숙 대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안녕하십니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입니다. 저희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합니다. 15년이 넘게 입양특례법을 제정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으로 단정 짓고 입양을 종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친부모와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보낸 엄마들은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세상 사람들은 비정한 모성 또는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출산제 또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남녀 모두의 책임임에도 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것입니까? 출산을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보호출산제를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호출산제 하에서는 출산을 하면 지자체의 장의 책임 하에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을 낳은 부모님의 기록은 알 수 없으며 입양을 가거나 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튼튼할 수 없듯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그것이 피치 못 할 사정 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의도되었다는 상처, 두 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또한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친부모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보호 시설에서 자란 아이에 들어갈 비용을 국가가 친부모에게 지원해주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동일하게 든다면 아이들에게서 친부모를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재고해봐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로 자신의 원부모와 단절 되어 버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을 가게 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 입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서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외입양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시 혼혈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비상시 임시 조치로서 시작된 해외 입양은, 시간이 흐르며 상설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입양 대상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 특히 미혼모의 자녀에게 향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법률혼 중심주의, 여성의 피임이나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결혼제도 밖 여성의 출산은 입양 산업으로 흡수되었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은 시설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국가는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낙태는 불법이었으며 미혼모로 출산을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양을 종용하였고 여성들이 겪을 정신적인 고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2005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하였고 미혼모라는 사회적 이름이 주어진 후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이 시작되고 입양을 강요당하였고 뱃속의 아이는 부모의 상태(학력, 나이, 자라온 환경)등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국내입양을 권하고 어떤 아이는 해외입양을 가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부의 주도 혹은 묵인하에 민간기관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서류를 위조해 해외로 입양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목적이 아이들의 입양 하이패스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호출산제가 이런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호출산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나 홀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출산에 임박하였거나 출산 직후의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에게 우리 국가는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안전한 임신중단법의 안내를 선행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하고 설명해주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유엔에서도 최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거듭 권고하였습니다. 보호출산제 이전에 우리사회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동양육에 관한 현실적인지원, 마을공동체의 확립을 통한 마을공동육아 확립이나 직장내 육아근무자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지원 등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 보호출산제라는 손쉬운 해결방안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이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시되어왔던 비양육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는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려 하는 부모에게 강제로라도 양육의 의무를 지우고 이행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부담도 줄이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려 한 부모의 부담도 덜게 해주는 길입니다. 국가가 나서 준다면 아이를 친부모가 키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인권과 아이의 인권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과거의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임신이 숨겨야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 입양을 보낼 권리 이모든 선택지 안에 국가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사회가 더 문제인 것이며 보호출산이라는 제도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어떠한 출산도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더 여성의 출산을 비밀로 만들고 스스로 선택을 하여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며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주체로 만들고 있는 불평등한 법입니다. 미혼모는 물론 어느 여성도 익명출산을 하고 출산을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어쩔 줄 몰라서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으로 낙인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법들부터 실행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며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4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출생통보제가 통과됨에 따라,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급물살을 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하고자 할 때,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고 아동을 기관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보호출산제도의 시행이 이주여성, 특히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할 이주여성과 외국인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위기임신 상황으로 인해 지원 단체를 찾는 여성의 절반 가량이 외국인인 만큼¹⁾, 보호출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이주여성이 보호출산제에서 보장하는 상담 서비스,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각종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만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임신부 지원 사업 또한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혼 관계보다는 혼인 관계 외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 여성이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출산 제도를 찾고자 하는 위기임신 상황의 이주 여성은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유학생, 비호신청자,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

1) 2022. 3. 23. 애란원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외국인 위기임산부와 출생영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쪽

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위기임산부 지원단체의 외국인 임신부 유형 통계를 보면 16%만이 결혼이주여성이고, 나머지는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²⁾. 이처럼 대다수의 외국인 위기 임신부가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각종 병원 비용에 있어서도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등록 외국인 임신부가 고위험 분만 상황에 처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가 청구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사회복지, 건강보험 제도의 차별적 운영을 극복하고 모든 임신부를 포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외국인 여성이 보호출산제도 이용을 위해 기관을 찾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기임신 상황에 처한 여성의 절반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만약 이 제도가 외국인을 배제한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위기임신 상황의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언어적 차별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거부될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 임신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그 내용과 질이 보장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내담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지금도 아동학대, 폭력피해 여성 등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는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이주 여성의 경우 상담기관을 통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한편, 이주 아동의 관점에서 한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출산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동일합니다. 이주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이주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가능성은 더욱 더 쉽게 포기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덧붙여, 이주 아동은 한국 내에서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2022. 3. 23. 애란원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외국인 위기임산부와 출생영아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49쪽

한국인이 친부라 하더라도, 외국인 미혼모의 경우 친부의 도움 없이는 아동을 한국에서 출생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부는 아동의 출생신고나 인지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려는 경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훨씬 빈번합니다. 이에 외국인 미혼모는 친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그 기간동안 아동을 출생 미등록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게 됩니다.

친부가 한국인이 아닌, 즉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아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은 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4천여 명의 외국인 아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국의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3개월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³⁾. 그러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기간 내에 아동에 대한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법 규정 위반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출입국 행정 절차에 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경우 친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에 대한 권리를 일절 포기한다면 아이의 국적 취득 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⁴⁾는 국적법 규정이 존재하나, 보호출산제도 하에서는 최소한 친모의 신원이 공공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직접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에 관한 법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거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무국적 위험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1호, 제46조 8호, 제94조 15호

4) 국적법 제2조 제1항 3호

한국은 무국적자에 관한 협약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 인정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무국적 위기에 놓인 아동을 구제할만한 법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무국적은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일단 발생하면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방안이 전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아동의 국적취득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유일한 아동의 보호 주체인 친모마저 아이를 포기할 경우, 보호출산제 하의 외국인 아동은 이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출생신고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자랑하지만, 이는 한국 국적의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의 도입을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 2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도가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아동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는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5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 들어가는 이야기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을 기초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차별금지에 대한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시행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각종 법제도안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와 차별에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만들어진 졸속법안으로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 법안입니다.

장애와 관련한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담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부부의 임신 출산을 막기위해 가족 등에 의한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임신중단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무책임속에서 장애아동의 부모가 온전히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을 모두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아동의 출산과 양육 이후에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축복받고 기뻐해야하는 탄생의 순간에 부모는 아이의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르는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지원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안에서 장애를 가진 부모는 배제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부모,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베이비박스라는 오랫동안 장애계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유기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장애에 대한 편견속에서 베이비박스라는 익명의 공간이 더 많은 장애아동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견되는 아동의 많은 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우려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일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이러한 어려움 중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제로 많은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민하다 베이비박스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아이들은 장애인시설로 보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수용시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부모가 아이와 함께살기위한 어떠한 지원책도 제도도 만들지 못한채 장애아동의 반복되는 유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특별법안(대안)」 제14조는 출산 후 1개월 내에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베이비박스와 같은 장애아동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보호출산제도는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위기임신상태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장애가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이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결국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위해 국가에 강력하게 제안하고 싸우며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바꾸어나가고 있는 사회환경속에서 이 법안은 장애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권리를 찾기위한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의 권리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특별법안(대안)」 제9조 제3항에서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산부의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언급한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와 함께 임신 출산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부부나 교제과정에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적인 불임시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증장애를 가진 부부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중단의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출산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제도안에서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특별법안(대안)」은 마치 관련하여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며 장애를 가지고 출생하게 되는 장애아동의 권리도 장애를 가진 여성의 출산의 권리도 모두 침해하고 있는 법입니다.

▣ 맺는 말

법은 이 사회속에서 인간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만들어지는 법이 혹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신중하게 점검해야합니다. 태어나는 새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이익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그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나갈 수 있을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장애와 관련한 법에서 규정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무책임은 모른척하면서,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 법하나 만들겠다는 국회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의 법대로라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답도 평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산모라는 이유로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당당하게 장애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모두, 장애아동이 한명이라도 더 사회속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국가의 제대로 된 지원책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을 오히려 어렵게하는 이 법을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6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조민호 대표
(아동권익연대(준))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1. 지금 모든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 입법이지 ‘보호출산제’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시절 1977년도 국내입양(시설수용)피해 생존자이자, 같은 처지의 당사자들(아동시설퇴소인)의 권익을 돕고 연대하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아동유기와 출생비등록, 불법입양, 아동권리 침해등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나서야 온 나라가 비로소 ‘아동권과 모성(여성)권’에 연일 이슈가 되었고 지난 6월에 출생통보제가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년후 ‘보호출산제’보완후 시행한다는 전제아래 지난 9월에 ‘보호출산제’가 본회의 문턱까지 상정되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온 ‘보호출산제’를 아동인권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 법안에 아동의 권리가 이토록 무심하게 배제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와 유감이 절로 나왔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공적이며, 보편적인 아동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더 이상 저와 같은 ‘고아호적’의 피해 아동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1977년 4살 무렵 여름에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 길을 잃은 미아였습니다. 그 무렵에 춘천 오순절 입양위탁소에 입소되었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가족을 찾지 못하고, 온갖 상처와 트라우마를 껴안은채 ‘고아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길을 잃은 아동에게 원가족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입양위탁소에 수용되었고 6개월만에 입양, 시설장과 춘천시청, 춘천지방법원에 의해 ‘고아호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8~1980년 사이 영국과 미국으로 2번의 해외입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해외입

양이 좌절되자 원주 시설로 전원 조치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채 끌려온 시설은 말이 고아원이지 강제 수용소나 다름 없었습니다. 시설에 입소 되자 마자 방을 배정받아 생활했고, 매일 아침 6시면 기상하여 체조하고, 예배보고, 청소하고, 식사등을 이어가는등 일상이 철저히 군대식 제식훈련소와 같았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고, 감당할수 없는 군대식 열차레, 매일 벌어지는 구타와 폭력, 원치않는 강제노동, 굶주림, 원산폭격, 패대기... 어린 아동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폭력에 일단 여기서 살아 생존해서 나가야겠다는 일념 뿐이었습니다. 소풍 가는날 공포에 질려 실수로 오줌 싣다고 야구방망이로 무참하게 몽둥이 구타를 당해 일주일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했던 고통, 부모에게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가 말대꾸 한다고 피멍이 들도록 맞아서 기절을 했던 고통스런 기억..반복되는 폭력과 학대에 아동의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하루 하루를 무사히 버티며 살아내는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동인권이 전무하던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가족과 부모가 있는데도 누구의 동의도 권리도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로지 국내,외 입양을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무작위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모없는 '고아호적'의 관행이었습니다. 당시 시설수용소에는 이렇게 '고아호적'으로 수용된 아동들이 100명정도였고, 관할 원주지역에만 5개의 시설이 있었으니 그 수는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준비하며 돕고 있는 '아동권익연대회원(고아원퇴소자)'들은 '고아'라는 낙인과 차별과 혐오가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조차 차마 입밖으로 꺼내지 못한채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아호적'으로 살아가는 시설 퇴소인들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대부분 무연고자로 호명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3,104명(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이 '자립청년' (?)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퇴소해 사회에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하고 부정당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시작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시대에 따라' 입양특례법'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변했지만, 아동인권의 근본적 출발점인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는 여전히 '보호'라는 소극적인 선언적 문구만 있을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있게 보장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고,보편적인 아동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아동의 출생과 등록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원가정에서 친생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며 양육받을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분리 해서도 안되고 친생부모와 생이별을 강요할수 없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분리불안'은

아동에게 평생 지울수 없는 폭력,학대,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천부(천륜)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에 출생하는 아동도 권리의 주체입니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을 비준한지 30년이 넘도록 입법하지 않은 실효적인 국내법-아동인권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유아 아동들이 국가의 사회가 무관심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사이 죽어 가고,팔려 가고,납치,유괴되어 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아동의 생명을 지켜내고 권리를 위해 공론화 되었다는건 다행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과거의 관행대로 공적 책임주체가 빠져있고,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무시된 채 시행하려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동의 존엄과 생존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파괴하며 저와 같은 '고아호적' 피해자를 양산할뿐인 반인권적,반문명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상기해봅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 아동이라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채 '고아호적'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문명이 개명하고 OECD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아호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 입법'은 아동인권의 원칙적이며 사회적 기본권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저출생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하고 논의해서 입법해야 할 것은 아동권과 모성(여성)권 그 어떤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온전하고 조화롭고 획기적인 모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입법입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의 출생과 양육 정책에 있어서 '보호'라는 소극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기본권리와 의무를 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그 첫 순간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을 축복받으며 원가정에서 친생부모에 의해 애착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양육받을 권리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아동인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과 함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도 시급히 입법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7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이다정 간호사/작가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 단편소설: 2043년 <보호유기종합센터>를 방문하다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지 한 달 되는 화창한 어느 봄날, 20년 전 멤버들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보호유기종합센터>를 방문한다기에 얼굴도 볼 겸 나도 합류하기로 했다.

집합장소는 센터 앞에 있는 '유기 천국'이라는 한식당이다.

약속 시각은 12시인데 며칠 전부터 센터 앞 광장에서 X-아이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다기에 혹여나 늦을까 싶은 마음에 일찍 출발했다.

6262-119라는 대표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있는 <보호유기종합센터> 광장에서 시위 중인 X-아이들이 나에게 준 핏빛의 전단지에는 X자가 눈에 확 띄는 사진과 'X-엄마를 찾고 싶다.', '국가가 나를 고아로 만들었다.'라는 글이 선명한 고딕체로 쓰여 있었다. 특히 '내 아들, 내 손주를 찾아 주십시오.'의 글은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X-아이가 된 것을 알게 된 강남 갑부가 아이를 찾고 싶다는 인터뷰가 있었다. 그리고 피에타상 사진과 함께 있던 아래의 글은 너무 특이해서 적어본다.

'주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알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은총이 가득하시고 여인 중에 복되신 성모 마리아
 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도 어머니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셨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고아와 아동 유기는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박혁거세와 김수로왕이 생각나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글쓴이의 의도를 도통 모르겠다.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두레박 타고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나?’ 하여간 요즘 아이들의 언어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유기 천국’이라는 식당은 김미련 교수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김송이 변호사가 미리 와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잔을 주문하고 변호사님께 향했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다정 간호사님, 아니 이제 작가님이 더 편하네요. 반가워요.”

김송이 변호사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한다. 김 변호사는 인권 전문 변호사로 원리원칙주의자인데 나와 서로 간에 무척이나 어색했던 적응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둘도 없이 편한 사이로 지낸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저 앞의 시위대는 <X-유기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들 맞지요?” 전단지 살펴보면서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보호출산제 아이들과 베이비박스 출신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폐지하라고, 이미 프랑스는 법을 폐지하기는 했지만, 예전 프랑스처럼 X자를 그린 옷을 입고 드러눕기도 하고, 격렬하게 시위하고 있고요. 물론 어르신들도 시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행동력은 X-아이들과 장애인 단체가 있으니 <보호유기종합센터>를 폐지하라면서 두 단체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X-유기출산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쩌다 <보호출산제>가 <보호유기출산법>이 되고, <보호유기종합법>이 된 것인가요? 법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임신 중단 관련 법 정비와 위기 및 보편적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확대로 인하여, 원치 않는 출산과 양육 기피가 많이 줄어들고, 양육비 대지급법의 보편적 실행으로 아동의 양육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비 장애아동의 유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출산 영향이 컸겠지만요, 그러나 이다정 간호사님이 계신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에서 주장하셨던 부분인 <보호출산제>가 의료기술의 발달과 출산 한 달 후 비밀 출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14조 조항에 따라 실제적인 <장애아동 특화 유기법>이라는 경고가 법안의 통과로 작동되기 시작하자 장애아동의 유기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 장애아동은 산전 기형아검사와 정밀초음파검사를 통한 사전 보호출산제 그리고 신생아 청력검사, 눈에 보이는 기형, 미숙아 발생 시 사후 보호출산제를 이용합니다.”

김송이 변호사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특히 미숙아의 경우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투병 중일 때 뇌병변장애 우려로 인하여 부모가 보호출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요, 심지어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피부의 큰 반점, 구개구순파열이나 다지증, 심장병 등도 보호출산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다 보니 아동 장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좀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수요가 있어서, 몇 년 후부터 그 <보호출산제> 시한을 한 달에서 4년으로 소급적용하게 하면서, 장애아동은 완벽하게 <보호출산제>로 유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화난 표정으로 유기농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반발도 많았는데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보호출산제>를 해야 한다.’라는 해괴한 무적의 생명 논리로 인하여 블랙홀에 빨려가듯이 순식간에 법안 통과가 진행되었지요.

그러다가 이후 노인관련 ‘간병살인’ 문제가 대두되자 ‘무적의 생명 논리’가 또다시 등장하여 <보호유기종합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이 변호사 얼굴에 보이는 깊은 주름이 그동안의 고생을 말해 주는 듯하다.

“원래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보호출산제> 관련 ‘아동 유기는 패륜이다.’라며 반대 성명서를 내고 그러셨던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 자꾸 합법적 유기가 안 되면 살인이 발생한다고 하니,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군요. 그런데 유기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들어갔나요?”

김 변호사에게 질문하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유기농 원두라서 그런지 산미가 느껴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향이 특히 풍성하다.

“아! 그게, 국어국문학과 교수단체가 ‘유기를 왜 보호라고 하나!’면서 ‘익명성 지켜주는 게 무슨 보호냐?’ 국어 똑바로 사용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난리를 치면서 ‘보호, 유기’ 둘 다 넣는 것으로 합의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취약한 가족 안에 있을 때, 국가는 그 가족을 함께 도움으로써 약자와 가족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국가가 보호한다. 이건 사실 국가의 복지 철학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상하게 진행되었네요. 음……. 유기가 합법화되고 권리가 되는 사회라면, 가족이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면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동이건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간에요. 백세 시대니까 가족보다는 자신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나 봅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몇 년 후에 아동 유기 시한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자폐 스펙트럼 아동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논문이 S대학 언어인류학과 교수님이 발표한 것인데 ‘유기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로, ‘버림받은 아이가 구조된 아이’로 표현되면서 잘못된 언어 사용과 그에 따른 인식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아이를 구조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와 사상이 주입되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X-유기출산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X-유기출산법의 가장 큰 혜택은 아이의 유기와 익명성의 보장, 분만 관련 산전 후 지원인데 논문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아동 유기에 대한 죄책감을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없애준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지철학과 국민의 가족관계 관련 책임감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변화를 낳았으며 절대 되돌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상적인 논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역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한다.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센터 방문이 어렵다던데 어떻게 방문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 그게 이 유기센터에 셀프유기하는 곳도 있거든요. 김 교수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셀프유기 상담 예약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계통의 유명인이시니까 전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나 봅니다.”

‘셀프유기는 또 뭐지?’ 셀프유기에 관해 물어보려는 순간 식당으로 들어오는 김미련 교수님이 눈에 띄었다.

“아! 저기 김 교수님이랑 다른 분들 들어오시네요. 점심 먹어야 하니까 메뉴판도 구경해 보세요. 여기 유기 천국 식당이 유기농 쌀을 비롯한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벽에 있는 메뉴판에는 갈비찜 정식, 돌솥밥 정식, 보리밥 정식에 단품으로는 더덕구이와 모듬전, 황태구이가 있었다.

“저는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동, 장애아동, 장애인, 노인, 셀프유기……. 어쩌다가 대한민국 복지가 유기 천국이 되었답니까?”

나는 양쪽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물어보았다.

“시작은 2023년 <보호출산제> 통과였습니다. 국가가 유기를 합법화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 막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네요.”

답을 하는 김 변호사의 얼굴에 후회와 절망의 빛이 돌았다.

바람이 불어 창밖으로 보이는 <보호유기종합센터> 앞 벚나무에서 벚꽃잎이 꽃비처럼 날리고 있다. 꽃잎은 공간을 황홀하게 수놓고 있지만, 지금은 풍성한 꽃나무가 일주일 후면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지도 ‘보호’는 흩어지듯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 ‘유기’만이 남았다.

소설을 마칩니다.

작가의 말: 사람이 사람을, 가족이 가족을 합법적으로 유기하게 하는 법을 국가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약자가 있는 취약한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지원하여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복지 철학의 문제이며, 취약한 가족을 함께 돕는 것, 그것이 정부와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당연한 말입니다만,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작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세상밖으로 나오려서 애쓰는 그 작은 아기를 유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어른들이 모여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 단지 상상 속의 소설이기를 바라며
2023년 10월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이다정

참고사항: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는 보육원원장의 퇴소 아동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룬 실화소설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과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의 작가이며 위 소설도 단편집에 포함될 소설입니다. 무료공개는 가능합니다만 무단편집, 부분발체, 상업적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블로그(네이버 looktree)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발표 8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